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1

제출연월일 : 2006. 9. 29.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u>제안이유</u>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법률 제7670호, 2005.8.4)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322호, 2006.2.8)의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새로 신설된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내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현행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여 소속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월정수당은 월 1,200,000원으로 함(안 제3조)
- 나. 제7조(회기수당 지급기준) "삭제"
- 다. 별표 1(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중 일비 10,000원을 20,000원으로 조정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췌

나.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통보 내용

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위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월 1,200,000원으로 한다. 단, 1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월정수당은 매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일비 "10,000원"을 "20,000원"으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	제1조(목적)
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지방자치	•••••
법 제32조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	•••••
라 한다) 교육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
<u>회기수당</u>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월정수당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한다.	•••••
제3조(회기수당 지급) 회기수당은 회	제3조 <u>(월정수당 지급)</u> ①위원의 직무
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	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월
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위원회의 회	1,200,000원으로 한다. 단, 1월 미
의(소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	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②제1항의 월정수당은 매월 충청북
<u>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u>	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공무원
하여 지급한다.	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회기수당 지급기준) ①위원에게	<삭 제>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	
에 110,000원으로 한다.	
②원격지회의출석비는 회의당일 출	
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위원회사무실	
소재지로부터 60킬로미터 이상)지역	
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	
표"에 의한 교통운임(일비를 제외한	
다)·숙박비 및 식비(3분의 1)를 지급	
<u>한다.</u>	
③ 제2항의 원격지 회의 출석비 지	
급대상 지역은 별표3과 같다.	

현 행							개 정 안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제8조제1항 관련)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야당)	
의 장부의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의 장부의장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20,000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위 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위 원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20,000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위 월 등급 - 성액 성액 [()(U) 46()()() 25()()								비고:	: (현	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원격기	지회의출석비 지급대상지역	<삭	제>				
	(제7조제3항 관련)						
	(단위 : 킬로미터)						
시·군별	대 상 지 역						
	동일원(71.0), 상모면(80.7),						
	살미면(71.7), 소태면(94.8),						
충주시	엄정면(85.8), 산척면(85.8),						
	동량면(81.8), 금가면(83.8),						
	가금면(81.8), 앙성면(77.8),						
	노은면(69.8), 신니면(63.8),						
	동일원(118.9), 봉양읍(109.2),						
	백운면(120.9), 송학면(129.0),						
제천시	청풍면(129.7), 금성면(130.2),						
	수산면(116.0), 한수면(124.7),						
	덕산면(109.4)						
	산외면(64.3), 외속리면(63.2),						
보은군	내속리면(66.1), 삼승면(66.1)						
	탄부면(67.2), 마로면(70.1)						
	동이면(63.4), 안남면(74.2),						
옥천군	안내면(72.1), 청성면(75.8),						
〒包也 	청산면(77.5), 이원면(64.6),						
	군서면(60.6)						
	영동읍(83.4), 용산면(87.2),						
	황간면(100.0), 추풍령면(108.0),						
영동군	매곡면(104.9), 상촌면(110.7),						
	양강면(87.4), 용화면(113.4)						
	학산면(97.7), 양산면(100.9),						
	심천면(74.0)						
괴산군	장연면(65.6), 연풍면(70.4),						
의'신신	불정면(62.2)						
음성군	생극면(60.5), 감곡면(71.6)						
단양군	단양읍(143.5), 매포읍(155.6),						
	단성면(154.7), 대강면(155.4)						
	가곡면(150.7), 영춘면(164.4),						
	어상천면(164.8), 적성면(168.6)						

관계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방자치법의 준용) 지방자치법 제5조, 제21조, 제32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3조, 제59조 내지 제68조, 제74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교육위원"으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의회"·"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 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 으로 본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준용)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 내지 제15조의5, 제17조의2, 제17조의4 내지 제19조, 제19조의3,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지방의회 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 할 때 지급하는 여비
-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15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법 제32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 1. 의정활동비 : 별표 5에 의한 금액
 - 2. 여비 : 별표 7 및 별표 8에 의한 금액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3. 월정수당: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 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통보 내용

- 의정활동비 : 월 150만원(연간 1,800만원)
- 여 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7 및 별표8에 규정한 범위
- 월정수당 : 월 120만원(연간 1,440만원)